

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809 |
|----------|-----|

2023년 6월 22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3년 5월 30일, 김경훈 의원 외 47명

나. 회부일자: 2023년 6월 5일

다. 상정일자: 제319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3년 6월 22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김경훈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수소산업육성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,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위원회 당연직과 부위원장을 국장에서 부서장으로 변경(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).
- 위원 임기 규정 삭제, 심의·의결 후 위원회 자동 해산 규정(안 제11조제3항).
- 위원의 임기 관련 규정 삭제(안 제11조제3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해당없음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

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: 박귀수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소산업육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,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.

<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>

| 조 항 | | 내 용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안 제11조 | 제1항 | · 수소산업육성위원회 부위원장 변경(국장→부서장) |
| | 제2항 | · 수소산업육성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(국장 및 과장→부서장) |
| | 제3항 | · 위원 임기 규정 삭제, 심의의결 후 위원회 자동해산 규정 신설 |
| | 제5항(삭제) | · 회의 소집 등 관련 규정 삭제 |

- 위원회는 현행 조례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2021년 6월에 구성하여 매년 1회씩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.

1차 회의에서는 ‘2050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연구용역 자문’ 등, 2차 회의에서는 ‘그린비즈니스워크 2022 서울시 홍보관 운영 심의 및 제2차 수소경제 정책자문 전문위원회 총괄 회의 관련 자문’ 등을 실시한 바 있음.

연 1회 개최하는 위원회 회의를 위해 기존의 상설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, 별도의 의견 없음.

다만, 부위원장 직위를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낮추는 것은 동 위원회의 위상을 낮추는 것으로 비취질 수 있는바,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의 부분 중 “국장”을 “부서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장 및 과장”을 “부서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해산한다.

제11조제5항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